

[별표 4]<개정 1985.7.3, 1992.10.2, 1996.12.28>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기준(제24조제1항관련)

1. 도축검사

가. 검사구분

생체검사·해체검사·시설검사 및 특수검사로 구분한다.

나. 검사요령

(1)생체검사

개체별로 망진·촉진·타진·직장검사등을 생체검사실(장)에서 실시한다.

(2)해체검사

방혈 및 박피상태와 장기검사를 작업장내에서 실시한다.

(3)세부검사요령

(가)생체검사

- ① 검사는 도살 직전에 실시한다.
- ② 수축은 정결하게 계류하여야 한다.
- ③ 도살전에 생체중량을 계량한다.
- ④ 촉진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 ㉠ 각근 또는 이근 부위의 검온을 실시한다.
 - ㉡ 안검·비강 및 구강내의 검사를 실시한다.
 - ㉢ 경부 구간 및 전지를 촉진한다.
 - ㉣ 항문·생식기 및 후지를 검사한다.

(나)해체검사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 ① 혈액 및 가죽
- ② 두·설·인후·경부와 그 인근의 임파절
- ③ 폐장·폐문임파절 및 종격막
- ④ 심장·심낭(양심실을 동맥에 따라 절개한다.)
- ⑤ 횡격막
- ⑥ 간장·간문 및 그 인근 임파절
- ⑦ 위장·장간막임파절 및 망막
- ⑧ 비장·췌장·신장 및 그 인근임파절
- ⑨ 방광·고환·음경·난소·자궁·질 및 외음
- ⑩ 육

(다)특수검사

- ① 소
 - ㉠ 내외교근(특히 하악을 병행하여 절개 검사한다)
 - ㉡ 간장은 수담관 및 우엽 좌엽을 횡단하여 절개한다.
 - ㉢ 신경은 지방을 분리한 후 검사한다.
 - ㉣ 자궁은 절개 검사한다.
 - ② 말
 - 두부를 횡단하여 비중격을 절개하여 점막을 검사한다.
 - ③ 돼지
 - ㉠ 복근·횡격막·경·심장·설 및 인후를 절개 검사한다.
 - ④ 면양·산양
-

(라)필요에 따라 시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다. 해체검사기준

구분	이상질병	폐기			가축별	비고
		일부	장기 전부	내 용		
전부 폐기	범발성결핵 중증폐결핵 2개이상의 장기와 그 임파선에 결핵병 변이 만연된 것. 전신근염 전신근육수종 황증 패혈증 농독증 구간낭충 선모충			고도의 것으로 육질에 미치는 것 구간의 다수기생 현미경검사	소·돼지 소동물 전 전 전 전 소·돼지 전 소·돼지 돼지 소·돼지 소동물 소동물 소동물 소동물 전 전 소·돼지 전 전 말 돼지 전 전 소·돼지	① 가축별난에 “전”이라 함은 모든 가축을 말한다.
두부	인후두임파선결핵 이하임파선결핵 악하임파선결핵 임파선결핵 두수종 두농양 두낭충증 악농양 악방선균병 선역 편도선 방선균증 설염 설방선균병 설낭충증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전 전 전 전		소·돼지 소동물 소동물 소동물 소동물 전 전 전 전 소·돼지 전 전 말 돼지 전 전 소·돼지	③ 폐기일부난 중 “부분”은 구분 의 일부를 말 함.
폐장	폐결핵 기관임과절 결핵 기관결핵 폐기관임과절결핵 하부흉골임과절결핵 늑막염 혈액흡입폐 폐기종 폐충혈 및 울혈 폐수종 폐빈혈경색		전 전 전 전 부분 부분 부분	일개소에 결핵병변이 발생되었을때는 폐·기 관·늑막을 전부 폐기 분리 불능한 때는 전부 폐기 결핵 병변이 있을 때에 는 병변부 일개소라도 장기와 부근임과절은 폐기(이하 같음)	소·돼지 소동물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폐출혈경색 구름성폐염 폐농양 기관지확장증 선역 폐방선균병 화농성폐염 괴저성폐염 폐기종 폐육변 폐사입병 폐포충증 폐간질증 폐원충병 폐신충증 폐침윤 기타병변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전 전 전 전 전	심할때는 전부폐기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말·돼지 소·돼지 소·돼지 소·돼지 전 전	
심장	심장결핵 심낭수종 심낭염 심근염 심내막염 심장낭충증 심낭결핵 심지방취약,위축	 부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중 형 경 막	중경막임파절결핵 형경막임파절결핵 형격막결핵 형격막수종 형격막근염 형경막농양 형격막낭충증 형격막늑막염 형격막복막염 형격막파열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전 전 전 전	전부폐기 전부폐기 전부폐기	소·돼지 소·동물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비장	비종 비결핵		전 전		전 소·돼지 소·동물	
간장	간결핵 간임파절결핵 간충혈 간울혈 간모세혈관부맥반 간출혈 지방간 간실질염 간간질염 간포막염 간사입증 간포충증 간세경낭충증 간회충증 간신충증 코렘비아장결절충증 간폐질증 간방선균병 담낭 및 담포염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전 전 전 전 전	간 및 임파절전부 폐기	전 전 전 전 소 전 전 전 전 말 돼지 돼지 돼지 돼지 전 소·돼지 전 전	

	담석 기타병변	부분 부분			전 전	
췌장	췌장결핵 췌장임파절결핵 췌장염 췌질증 췌결석	부분 부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위	위결핵 위임파선결핵 위수종 위염 위궤양		전 전 전 전 전		소·돼지 소동물 전 전 전 전	
장	장결핵 장임파결핵 장염 장수종 장사립증	부분	전 전 전 전		전 전 소·돼지 전 전	
장막	복막결핵 복막염		전 전		전 전	
신장	신결핵 신임파절결핵 신장낭종 신장출혈 신장출혈 신지방괴사 신염 신우염 신농양 신결석증 신종양 신포충증 신충증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돼지 전	
방광	방광염 방광결석 방광종양		전 전 전		전 전 전	
난소	난소낭종		전		전	
질	질탈	부분			전	
	질염		전		전	
유방	유방결핵 유방염	부분	 전	심할 경우에는 전부폐기	전 전	
고환	고환염 고환종양		전 전		전 전	
기타	제대염 좌상 농양 종양 골연증 골절 근염 근육수종 흑육종 황달 구간임파절결핵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전	임파절 영역 전부폐기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2. 답의 검사

가. 검사 구분

생체검사·도체검사 및 특수검사로 구분한다.

나. 검사 요령

(1) 생체검사

계류장 또는 도살방혈실에서 계군별 검사와 개체 검사를 하여 이상이 있는 닭을 제거·폐기한다.

(2) 도체검사

① 내장적출라인에 설치된 도체검사대에서 내장적출 전후의 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있는 도체를 제거·폐기한다.

② 우모 및 잔모의 제거상태를 검사한다.

③ 비질의 기형과 경골의 부적절한 제거여부를 검사한다.

④ 내부장기·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삼출물 및 도체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⑤ 내장검사에서 1개의 장기가 이상할 경우에는 해당장기를, 2개이상의 장기가 이상할 경우에는 내장 전체를, 2개이상의 장기가 이상하여 전신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내장 및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3) 특수검사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나 이상도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도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실검사를 실시한다.

3. 원유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시설위생검사 및 위생관리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수유검사

관능검사·비중검사·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수유전에 실시한다. 다만, 진애검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나) 시험검사

적정산도시험·세균수시험·체세포수시험·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성분검사 및 기타 검사는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세균수시험과 체세포수시험은 각각 목장별로 15일에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착유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목장, 새로 원유를 납유하는 목장, 기타 부적합한 원유를 납유한 목장의 원유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 목장집유시 원유의 냉각온도는 5℃이하여야 한다.

(2) 시설 위생검사

집유 전후 각1회이상 실시한다.

(3) 위생 관리검사

(가) 종업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 종업원은 작업전에 개인위생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검사 기준

<일반기준>

(1) 작업장의 경영자는 집유가 금지된 원유 및 착유우(양)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장에서 착유된 원유는 수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중화·살균·균증식의 억제 및 보관을 위한 약제가 첨가되어서는 아니된다.

(3)우유와 양유는 동일 작업시설에서 수유하여서는 아니되고 혼입하여서도 아니된다.

<품목별 기준>

(1)우유(착유된 그대로의 것)

(가)세균수(표준한천평판배양법):1ml 당 100만이하

(나)체세포수 : 1ml 당 75만 이하

(다)비 중 : 15℃에서 1.028 내지 1.034

(라)산 도 : 저지종 0.20%이하

기타유우 0.18%이하

(마)알콜시험: 적합

(바)진애검사 : 2.0mg이하

(사)관능검사 : 적합

(2)양유(착유된 그대로의 것)

(가)세균수(표준한천평판배양법) : 1ml 당 100만이하

(나)비 중 : 15℃에서 1.030 내지 1.034

(다)산 도 : 0.2%이하

4. 계란의 품목별·등급별 검사기준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